

〔 보험차익금 국고보조금 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

①과세기간	년	월	일부터	상 호	③성명	
	년	월	일까지	②사업자등록번호		

1.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조정

보험차익 계산			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				필요경비산입액		
④ 보험금	⑤ 멸실손괴 자산가액	⑥ 보험차익 (④－⑤)	⑦ 과목	⑧ 취득한 자산가액	⑨ 취득할 자산가액	⑩ 계 (⑧＋⑨)	⑪ 한도금액 (⑩－⑤, 다만, ⑪≤⑥)	⑫ 본 인 계상액	⑬ 한 도 초과액 (⑫－⑪)
계									

2.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조정

⑭보조금 수령액	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				⑰필요경비산입액 (⑭ 또는 ⑰ 중 작은 금액)
	⑮과 목	⑯취득한 자산가액	⑰취득할 자산가액	⑱계 (⑯＋⑰)	
계					

3. 미사용분 총수입금액 산입액 조정

⑳구 분	㉑필요경비 산입연도	㉒계 획 서 제출금액	㉓사 용 액	㉔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(㉒－㉓)
계				

작성 방법

- 「소득세법」 제31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험금사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⑨취득할 자산가액란 : 보험금사용계획서(별지 제4호서식)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⑰취득할 자산가액란 :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(별지 제5호서식)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㉓사용액란 : 법정기한 내에 자산취득 등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⑬란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㉔란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.